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1 인 창 조 기 업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2.6.10.공포, '22.12.11.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1인 창조기업 기준요건 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 1)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회사의 경우로 구분하여 청년의 실질적 소유 및 경영에 관한 기준 마련

나. 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 전임강사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4)

- 1) 교육기관 전임강사 인력기준의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표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예정

3) 행정규제 : 협의예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39세 이하인 자(이하 “청년”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청년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44조의3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청년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별표 4의 3.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경영지도사로서”를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39세 이하인 자(이하 “청년”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u> <u>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청년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44조의3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청년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u>

	2. <u>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u>개인사업자</u></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연 락 처	(044) 204 - 7664